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94
----------	-----

2024. 9. 6.  
경제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8. 23. 강남구청장(혁신전략과)

나. 상정의결

-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2024. 9. 6.)

“ 원안가결 ”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한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공간 무상사용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6. ~ 2030. 12.

- 소재지 : 광평로39길 112 (수서동 730번지)

- 사업내용 : 실외 공간에서 로봇 시험 운행 등 테스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추진

나. 추진내용 :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전체 준공이

2024. 9월로 예상됨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

#### 4. 세부내용

가. 사용허가(대부) 신청현황

- 사용목적 : 실외 공간에서 로봇 시험 운행 등 테스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추진
- 시설규모

구 분	용 도	연면적(m <sup>2</sup> )	비 고
<b>합 계</b>		<b>8,153.31</b>	
협업지능 실증개발지원센터	연구 및 시험 공간	1,567.58	2024. 2. 무상 사용 완료
마이스터 로봇화지원센터		2,320.58	
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 (실외 로봇 주행공간)	로봇 주행 및 연구공간 등	4,265.15	<b>무상 사용 예정</b>

- 허가내용

시설명	기 관	연면적(m <sup>2</sup> )	사용기간	비 고
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 (실외 로봇 주행공간)	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265.15	2024. 9. ~ 2028. 12.	
	②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나. 사용료(대부료) 감면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항 제14호에 의거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②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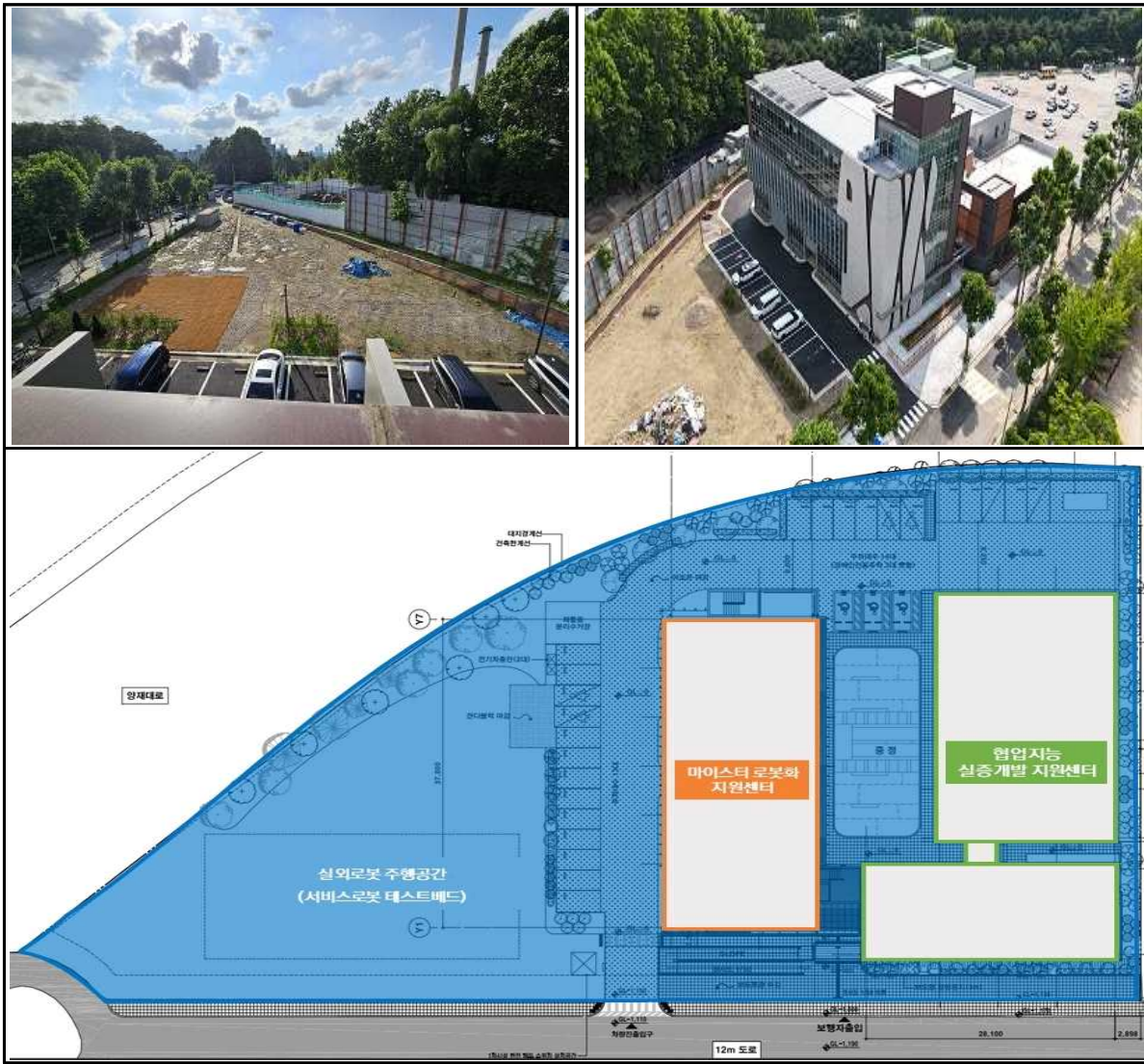
\* 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②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다. 추진경과 및 계획

- '23. 1. : 로봇플러스 2차 시설 설계 준공
- '23. 3. :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사업(1차) 시설 공사 재착공
- '23. 4. :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사업(2차) 시설 공사 착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스터 로봇화 연구(3차) 시설 설계 준공
- '23. 6. :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스터 로봇화 연구시설(3차) 착공

- '23.12. :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사업(1,2차) 건축물 준공
- '24. 6. : 마이스터 로봇화 연구시설(3차) 건축물 준공
-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 설계 준공
- '24. 8. :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 착공
- '24. 9. :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 준공(예정)

라. 현장사진



마. 추진효과

- 지능형로봇 생태계 전국 거점화 및 글로벌 수준의 창업 도시로서 강남구 위상 확립
- 수서, 세곡 지역을 로보콘 밸리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성장 지원

## 5. 관련법규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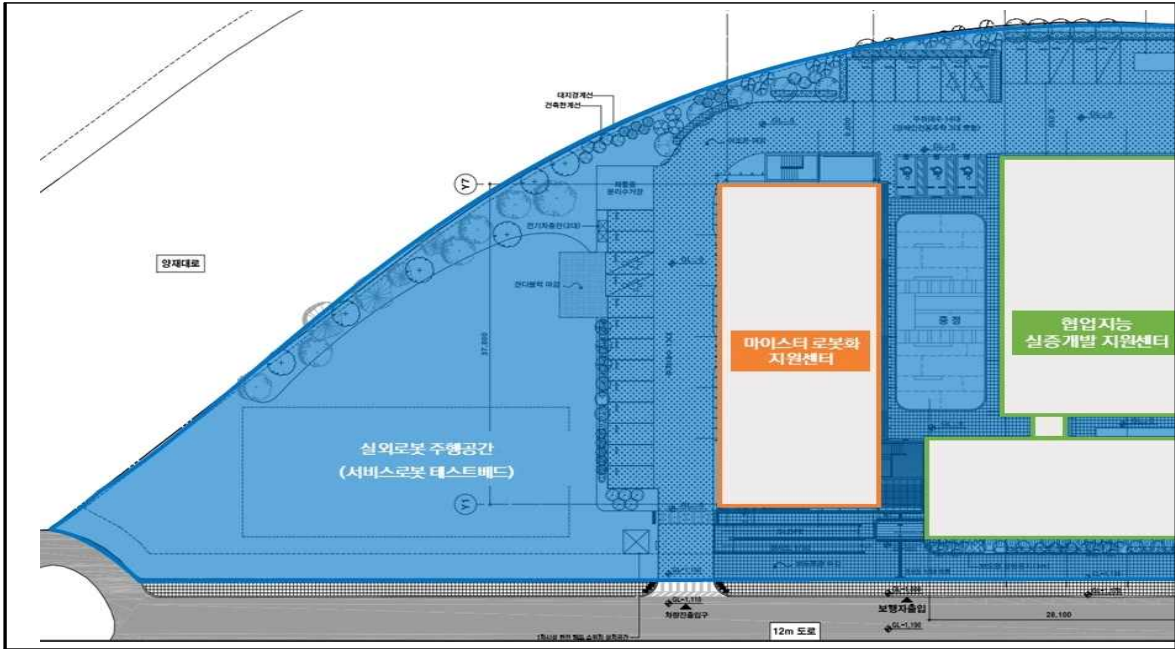
## 6.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주현 )

### 가. 공유재산 현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유의 공유재산 중 이 동의안과 연관된 행정재산(토지 및 건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39길 112 공유재산 현황 >

소유자	소재지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39길 112	
형태	규모	현재 사용자
토지 ■	총 5,949.50㎡ (약 1,803평, 건물부지 포함) (실외 공간, 4,265.15㎡ (약1,290평))	- (건물부지는 사용중)
건물 ■	(지상 3층 건물 1개동) 연면적 1,567.58㎡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건물 ■	(지상 4층 건물 1개동) 연면적 2,320.58㎡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나. 사용료 면제 신청 취지

- 위 행정재산 중 이 동의안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부분은 건물 및 건물부지를 제외한 실외공간(토지 ■ 실외 공간, 4,265.15m<sup>2</sup>)임.
- 이 실외공간을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사용료 면제 신청 현황

■ 2024년 8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39길 112
- 사용 면적: 실외 공간 (4,265.15㎡ , 약1,290평)
- 사용 용도: 로봇 주행 및 연구 공간으로 사용
- 사용 기간: 2024년 9월 ~ 2028년 12월 (4년 4개월)
- 사용 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라. 사용료 면제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 연구소가 사용하도록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으며, 이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어야 사용료 면제가 가능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은 각각 법령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임.

**< 법적 근거 >**

구분	근거 규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li> <li>•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제17조제5항제4호</li> </ul>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li> <li>•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li> </ul>

**마. 사용료 면제 기대효과**

- 수서동 730번지 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일환으로 로봇 주행 및 연구를 위한 공간(서비스로봇 테스트필드) 조성
- 로봇산업발전을 위한 효율적 운영, 건물과 부지 관리 일원화
- 강남구가 지능형로봇 생태계 구축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기반을 마련하여, 수서·세곡 로보콘밸리 육성 계획으로 확장 가능성 증대

**바. 종합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9길 112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유의 행정재산을 <강남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의 로봇 주행 및 연구를 위한 공간(서비스로봇 테스트필드)로 조성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심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안건 상정 및 심사 내역 >**

시기	심사	결과
2020.10.	<b>2020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b> • 안건: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공간구축(신축) 및 공유재산 <b>사용료 면제</b>	가결
2021.3.	<b>2021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b> • 안건: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공간구축(신축) 재심의(사유: 공사비 30% 증가)	가결
2021.11.	<b>2021년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b> • 안건 :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 및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 기반구축사업> 공간 신축	가결
2022.10.	<b>202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b> • 안건 :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 사업> 공간 공유재산 <b>사용료 면제</b>	가결
2023.12.	<b>2023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b> • 안건 : i)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공유재산 사용면적 확대, 사용기간 연장 ii)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 공유재산 <b>사용료 면제</b> (신규)	가결
2024. 1.	<b>2024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b> • 안건 :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시설> 공유재산 공간구축(신축) 재심의(사유: 공사비 30% 증가)	가결
2024. 2.	<b>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b> • 안건 :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공유재산 <b>사용료 면제</b> 재심의,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 공유재산 <b>사용료 면제</b> 재심의 (*2023.12. 이미 완공된 건물■에 대한 사후보고 내역 포함)	가결
2024. 2.	<b>2024년 제327회 임시회 안건 상정 및 의결</b> • 안건 :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사업> 공유재산 <b>사용료 면제</b> 등에 관한 동의안 i)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공유재산 사용면적 확대, 사용기간 연장 ii)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 공유재산 <b>사용료 면제</b> (신규)	가결
2024. 9.	<b>2024년 제321회 임시회 안건 상정 및 의결</b> • 안건 :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공간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예정)

○ 위 내역에 따르면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사업>은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후 강남구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게 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해왔음. 지금까지 강남구가 부지를 현물로 제공하고 총 사업비 312억원 중 구비 42억원을 투자했고, 발견된 토양오염을 정화하는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었으나 건물 2개동을 건립하여 해당 부지를 로봇산업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시설 부지였던 수서동 730번지를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까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간이자 첨단산업 로봇연구의 거점으로 활용하게 하여, 강남구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하겠음.

- 2024년 2월 건물 2개동에 대해서 이미 사용료 면제 동의를 받았으며, 이번 동의안을 통해서도 2024년 9월 완공 예정인 실외공간에 대해서도 사용료 면제를 받으려는 것임. 주변 임대료를 감안하여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사업> 공유재산 연간 사용료를 추계하면 엄청난 금액임. 향후에는 강남구가 면제해주는 사용료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전체 사용료 (면제) 추계내역>도 제출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됨.
- 이로써 해당 부지를 사용자가 모두 사용하게 되어서, 관리책임부서인 혁신전략과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대한 관리 사무도 사용자가 이행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고, 주차장 등은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삽입할 예정이라고 함.
- 이 사업은 10년 이상 진행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강남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성과를 활용하기 전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의회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여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음.
- 이에 대한 혁신전략과의 설명에 따르면 로봇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2024년 10월부터는 구민을 대상으로 견학 신청도 받고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함.

- 오랜 기다림에 기반한 성과활용기간이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므로, 강남구가 로봇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성과물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서역세권을 활용한 로봇기업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친환경 안심 로봇공원 등의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해보임.

## ※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24. 7. 10.]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참고 자료

(강남구 혁신전략과, 2024.8. 기준)

구분	추진사항
2020.4.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 용역(~21.3.)
2020.6.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지원 사업 공모 선정 협업지능 실증개발지원센터 1차분 설계(~20.11.)
20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산 : 47,000천원</li> <li>• 계약자 : (주)건축사사무소ميم(대표 : 이병희)</li> <li>•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여성기업)</li> </ul>
2020.10.	2020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안건 :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공간구축(신축) 및 무상사용 허가
2020.12.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중앙투자심사(조건부) 통과 - 심사결과 : 조건부 추진
2021.2.	수서동 730번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회복지시설 → 연구시설)
2021.3.	2021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의결 - 안건 :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지원사업 공간구축(신축) 재심의(공사비 30% 증가)
20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사업 공모 선정 협업지능 실증개발지원센터 2차분 설계(~23.1.) - 설계금액 : 52,283천원(1인 견적 수의계약) - 설계자 : (주)건축사사무소ميم(여성기업)
2021.6.	협업지능 실증개발지원센터 1차분 건축 공사 착공 (21.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산 : 1,305,396천원</li> <li>• 계약자 : (주)두성도시종합건설(대표:이정수)</li> <li>• 계약방법 : 공개경쟁(지역제한)입찰</li> </ul>
2021.7.	터파기 공사 중 굴착된 토양에서 오염 의심 정황 발생(건축시공사→건축과)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기반구축 공모사업 선정
2021.8.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사업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 심사결과 : 조건부 추진 - 심사내용 ① 운영주체 역할 분담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
2021.8.	② 운영수익에 대한 자치단체 환원 방안 협의 토양오염도 조사 의뢰(건축과→환경보건기술연구원) * 조사기간 : 21.8.6. ~ 21.8.24. 토양오염도 불소기준치 초과 결과 통보(환경보건기술원 → 뉴디자인과) 및 공사 일시 정지 토양오염신고(뉴디자인과→환경과) 토양오염개선조치 이행 안내(환경과→뉴디자인과)

2021.9.25.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

- 예 산 : 26,730천원
- 계 약 자 : 한국기술정책연구원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회약
- 조사면적 : 수서동 730번지(5,949m<sup>2</sup>) 중 4,000m<sup>2</sup>
- 분석결과 : 오염면적 1,661.78m<sup>2</sup> / 물량 5,249.33m<sup>3</sup>

2021.11.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안건 :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사업 및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위험성 기반구축 사업 공간 신축

토양정화공사 및 정화검증용역 발주

비고	토양정화공사	토양정화공사검증용역
예산	1,532,764천원	58,640천원
계약자	한국위험물환경기술(주) (주)에스에이치건설산업	(재)환경기술정책연구원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공개경쟁입찰 2회 유찰)
사업규모	면적 1,661.78m <sup>2</sup> / 물량 5,249.33m <sup>3</sup> / 심도 0~7m	

2022.8.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 설계 공모 심사 실시  
 - 접수기업 : 2개사 [건축사사무소 소량채, (주)클라우드나인]

2022.9.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 설계(~2023.3.31.)  
 - 설계금액 : 267,000천원(1인견적 수의회약)  
 -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소량채(설계공모 당선업체)

2022.10.14.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 사업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재상정 및 의결  
 안 건 :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 사업 공간 무상사용

2022.11.28.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 사업 공간 무상사용 동의안 구의회 의회 의결

2023.3. 협업지능 실증개발지원센터 1차분 시설공사 지반보강 공사(EcoSM 공법) 재개

2023.4.30.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 설계용역 준공

2023.6.21. 마이스터 로봇화지원센터 건축 공사 착공 (23.6.21.)

- 예 산 : 3,596,611천원
- 계 약 자 : (주)빌텍종합건설(대표:김현순)
- 계약방법 : 공개경쟁(지역제한)입찰

협업지능 실증개발지원센터 1, 2차분 시설 준공 및 임시사용 승인

2023.12. 2023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제출  
 - 안 건 :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시설 무상사용 허가

① 협업지능 실증개발지원센터 무상사용 기간, 면적 변경

- 면 적 : 1,451.36m<sup>2</sup> → 1,567.58m<sup>2</sup>
- 기 간 : 2022.12.~2024.12. → 2023.12.~2028.12.

② 마이스터 로봇화지원센터 무상사용 신규 허가

- 면 적 : 2,320.58m<sup>2</sup>
- 사용기관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사용기간 : 2024.3. ~ 2028.12.

- 결 과 : 수서동 730번지 로봇 연구시설 무상사용 허가 통과

**2024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제출**

- 2024.1. - 안 건 : 수서동 730번지 로봇 연구시설 공유재산 재심의(사유 : 공사비 30% 증가)  
- 결 과 : 원안 통과

**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상정**

- 안 건 : 협업지능 실증지원센터 취득 재심의  
          마이스터 로봇화지원센터 취득 재심의  
- 결 과 : 원안 통과

2024.2. **구의회 무상사용 동의안 구의회 의결**

- 안 건 ① 협업지능 실증지원센터 무상사용 기간, 면적 변경  
          ② 마이스터 로봇화지원센터 무상사용 신규 허가  
- 결 과 : 원안 통과

**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 설계 착수**

- 2024.4.
  - 예 산 : 19,800천원
  - 계 약 자 : (주)대상건축사사무소(대표:변소영)
  - 계약방법 : 수의계약

2024.6.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 공사 준공**

**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 공사 계약 및 착공**

구 분	합계	건축·토목	전기	통신
2024.8. 예 산	465,551	345,819	97,880	21,852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	1인견적 수의계약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의안 번호	394
----------	-----

제출연월일: 2024. 8. 23.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혁신전략과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한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공간 무상사용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6. ~ 2030. 12.
- 소재지 : 광평로39길 112 (수서동 730번지)
- 사업내용 : 실외 공간에서 로봇 시험 운행 등 테스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추진

나. 추진내용 :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전체 준공이 2024. 9월로 예상됨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

### 3. 세부내용

#### 가. 사용허가(대부) 신청현황

- 사용목적 : 실외 공간에서 로봇 시험 운행 등 테스트 및 산업통상  
자원부 공모사업 추진
- 시설규모

구 분	용 도	연면적(m <sup>2</sup> )	비 고
<b>합 계</b>		<b>8,153.31</b>	
협업지능 실증개발지원센터	연구 및 시험 공간	1,567.58	2024. 2. 무상 사용 완료
마이스터 로봇화지원센터		2,320.58	
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 (실외 로봇 주행공간)	로봇 주행 및 연구공간 등	4,265.15	<b>무상 사용 예정</b>

#### ○ 허가내용

시설명	기 관	연면적(m <sup>2</sup> )	사용기간	비 고
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 (실외 로봇 주행공간)	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265.15	2024. 9. ~ 2028. 12.	
	②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나. 사용료(대부료) 감면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항 제14호에 의거①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②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② 한국전자기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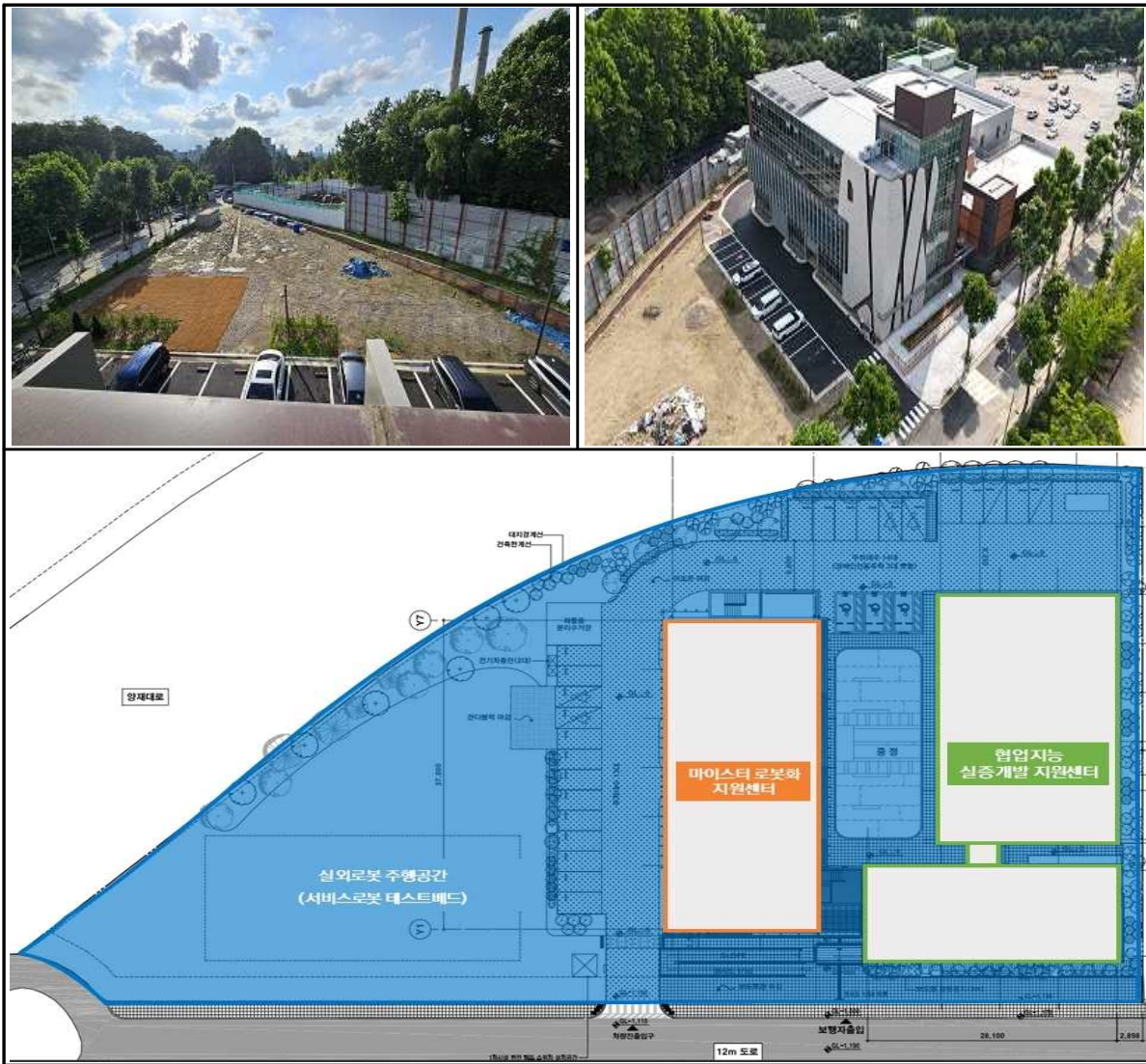
#### 다. 추진경과 및 계획

- '23. 1. : 로봇플러스 2차 시설 설계 준공
- '23. 3. :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사업(1차) 시설 공사 재착공
- '23. 4. :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사업(2차) 시설 공사 착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스터 로봇화 연구(3차) 시설 설계 준공



- '23. 6. :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스터 로봇화 연구시설(3차) 착공
- '23.12. :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사업(1,2차) 건축물 준공
- '24. 6. : 마이스터 로봇화 연구시설(3차) 건축물 준공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 설계 준공
- '24. 8. :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 착공
- '24. 9. :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 준공(예정)

라. 현장사진



마. 추진효과

- 지능형로봇 생태계 전국 거점화 및 글로벌 수준의 창업 도시로서 강남구 위상 확립
- 수서, 세곡 지역을 로보콘 밸리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성장 지원

## 4. 관련 법규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